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959

발의연월일: 2023. 8. 23.

발 의 자 : 신원식 • 이태규 • 윤두현

한무경 • 하태경 • 임병헌

노용호 • 이헌승 • 최영희

유경준 • 유의동 • 성일종

조명희 • 한기호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은 "핵무력 정책 법제화"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,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.

이처럼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미흡하여 유사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.

이에 재난의 정의에 "원자력사고(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 포함)" 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공격을 비롯한 원자력사고로 발생한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나목 중 "화생방사고"을 "화생방사고·원자력사고(핵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	1		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	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	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	나		
폭발 · 교통사고(항공사고			
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			
· <u>화생방사고</u> ·환경오염사	<u>화생방사고·원자력사</u>		
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	고(핵무기 공격으로 인한	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<u> 사고를 포함한다)</u>		
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			
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			
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			
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			
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			
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			
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			
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			
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			

한 피해	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